

영등포구의회
제209회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
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8. 9. 14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호로 2018년 8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구 주민자치회의 설치, 구성 및 운영, 자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나.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, 정원에 관한 사항 규정
(안 제3조~제5조)

다.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, 선정 및 위촉,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
(안 제6조~제12조)

라. 주민자치회의 회의 운영 및 주민총회 개최에 대한 사항 규정
(안 제13조~제20조)

바. 주민자치회 운영계획,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등을 포함한 자치계획 수립·결정·효력에 대한 사항 규정

(안 제21조~제23조)

사. 구청장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규정(안 제24조~제25조)

아.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등 규정

(안 부칙 제1조~제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: 2019년 시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(2018.7.19.~8.8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, 제29조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차 시범구로 영등포구가 선정됨에 따라,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및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, 총 28개의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됨

○ 제정안의 주요내용은,
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기능,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자치위원 추천관리를 위한 “위원선정 관리위원회”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자격, 임기, 임무, 위·해촉 등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3조부터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, 운영원칙과 자치회장, 감사, 간사 선출, 분과위원회의 구성, 주민총회 등 주민참여폭의 확대를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,
-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자치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24조부터 안 제25조에서는 주민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과 지원조직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,

- 안 제26조부터 안 제2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, 단체보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경과조치로, 이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,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 된 것으로 보며,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

○ 검토결과,

본 제정 조례안은, 풀뿌리 생활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새로이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, 입법취지와 조례안 내용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과 「지방자치법」 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,

2020. 5월까지 5개동이 시범 운영할 경우, 시행에 앞서 기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,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구 재정과 인력부담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

제27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.

제28조(주민자치회의 기능)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

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 등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1.19., 2017.7.26.>